

정 관

사단
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

사단 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 (이하 “학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품질경영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지역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품질경영의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4. 품질경영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7. 품질경영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2. 지역분회, 연구회 및 Quality Leaders Forum
3. 산학임원(산학부회장, 산학이사)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거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단, 회비납부 기간에 따라 년 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1)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 기업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5.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6.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2.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4.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 시까지 제8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전임회장)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임회장이라 하고 전임회장은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정
2.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3.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정회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가 요구할 때

2.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및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4 장 집행부

제14조 (집행부의 구성)

1. 집행부는 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2.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1인
3. 차기회장 1인
4. 부회장 30인 이내
5. 총무 1인
6. 부총무 3인 이내
7. 이사 60인 이내
8. 위원장 20인 이내
9.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부총무, 그리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4.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그 외의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6.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위원장, 그리고 지역분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출한다.
7. 세무서 업무로 등기이사는 필요시 회장이 추천한다.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업무에만 적용된다.
8. 차차기회장은 [세칙 9호] 차차기회장 선거 운영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9. 자문관은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관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0. 산학임원(산학부회장, 산학이사)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4.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보직에 재직 중일 경우로 제한되며, 보직을 인수받은 차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차기회장 임기에서 1년을 제외된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차기회장이 회장업무를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집행부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는 일

제20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분회, 연구회 및 Quality Leaders Forum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회원의 제명 결의.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이사, 위원장, 지역분회장, 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년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지역분회, 연구회

제24조 (지역분회, 연구회의 설치)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지역분회,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역분회, 연구회의 구성)

1. 지역분회, 연구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 (회계구분)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이사회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3.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 후 이사회 승인을 획득한다.

제28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기타 수입.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회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학회 운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임회장의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다.

제30조 (결산)

1. 회장은 1차 이사회 보고 1주일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3. 전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4조 (규정의 구분) 학회의 제반규정은 정관-세칙-내규로 구분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

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37조 (기타사항) 학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단 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 세칙

1. [세칙 1호] 집행부조직 및 운영세칙
2. [세칙 2호] 지역분회 운영세칙
3. [세칙 3호] 연구회 운영세칙
4. [세칙 4호] Quality Leaders Forum 운영세칙
5. [세칙 5호] 재정 및 회계 세칙
6. [세칙 6호]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 세칙
7. [세칙 7호] 한중 품질심포지엄 운영 세칙
8. [세칙 8호] ANQ 운영 세칙
9. [세칙 9호] 차차기회장 선거 운영세칙
10. [세칙 10호] 포상자 선정 운영세칙
11. [세칙 11호] 우수논문상 및 리뷰어상 선정 운영세칙
12. [세칙 12호] 우수발표논문상 선정 운영세칙

접수	20	년	월	일
확인	20	년	월	일
No.				

단체회원 입회원서

단체명	국 문			
	영 문			
주 소	우편번호 ()-()			
	전화		홈페이지	
담당부서			☎	
담 당 자			FAX	
			E-mail	

본 단체는 귀 학회의 회원으로서 가입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20 년 월 일

직위 및 성명

(직인)

사단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장 귀하

2003년 10월 11일 총회 의결사항

■ 정관대비표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제1장 총칙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관련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삭제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 . .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1. 정회원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품질경영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 . .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1. 정회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품질경영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자.	전문대학을 2년제 대학으로 용어 수정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 상실을 어렵게 수정
제3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3.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총회의 기능 강화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의 소집)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정회원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정회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총회 소집 수월하게 수정
제3장 총회 제13조 (총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제13조 (총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3조 (총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 의결정족수 변경
제4장 평의회 제14조 ~ 제 18조	제 14조 (임무) 1. 자산변동 2. 감사의 선출 3.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승인 4. 회장단이 추천한 이사의 인준 5. 회장이 제의한 주요안건 및 중요사항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또는 인준 제 15조 (구성 및 임기) 제 16조 (자격 및 선출방법) 제 17조 (소집) 제 18조 (의결정족수)	삭제	평의회 임무는 이사회로 이관
제5장 집행부 제20조 (집행부 임원)	제20조 (집행부 임원) 본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3. 이사 20인 이내 (당연직 제외) 4. 위원장 8인 5. 감사 2인	제15조 (집행부 임원) 본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6인 이내 4. 총무 1인 5. 이사 20인 이내 (당연직 제외) 6. 위원장 10인 이내 7. 감사 2인	집행부 임원 수 변경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제4장 집행부 제21조 1항 (임원의 선출)	제2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3. 이사는 회장단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회장단, 총무,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6.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임원선출 규정 명확화
제4장 집행부 제22조 1항 (임원의 임기)	제2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 21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임원의 임기 구체화
제4장 집행부 제23조 2항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제23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차기회장 임기에서 제외된다.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무 구체화
제4장 집행부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및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예산, 기결산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내규에 관한 사항 6. 분회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연구회, 위원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회원의 입회 및 제명 결의 10.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자산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분회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연구회, 위원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회원의 제명 결의. 10.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평위원회 기능을 이사회로 이관
제6장 분회 및 연구회 제29조 2항 (분회의 설치)	제29조 (분회의 설치) 2. 분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평의위원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4조 (분회의 설치) 2. 분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수정사항 없음
제6장 분회 및 연구회 제 30조 2항 (연구회의 설치)	제30조 (연구회의 설치) 2.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평의원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연구회의 설치) 2.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수정사항 없음
제8장 부칙 제41조 (시행일)	제41조 (시행일) 이 학회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으로 이동

■ 정관대비표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p>제 2 장 회 원</p> <p>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p> <p>(1)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p> <p>(2) 품질관리기사, 기술사, 기술계 기술자격 소지자.</p> <p>(3) 2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품질경영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자.</p> <p>(4) 품질경영분야의 연구 및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p> <p>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다.</p> <p>(1)전문대학 이상에서 품질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p> <p>(2)품질경영 분야의 연구 및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p> <p>3. 단체회원 학교,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p> <p>4. 특별회원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p> <p>5.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p>	<p>제 2 장 회 원</p> <p>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p> <p>(1)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p> <p>(2)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p> <p>(3)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p> <p>(1)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p> <p>(2)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p> <p>(3)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4.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p> <p>5.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이 될 수 있다.</p>	회원의 자격 및 종류 구체화
제2장 집행부 제16조 (임원의 선출)	<p>제 4 장 집 행 부</p> <p>제16조 (임원의 선출)</p> <p>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p> <p>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p> <p>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p> <p>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p> <p>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p>	<p>제 4 장 집 행 부</p> <p>제16조 (임원의 선출)</p> <p>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p> <p>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p> <p>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p> <p>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p> <p>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p> <p>6. 차기 등기이사는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p>	위원장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변경

2009년 4월25일 총회 의결사항

■ 정관대비표

수정조항	수정전	수정후	사유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p>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3)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2)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3)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4.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p> <p>5.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이 될 수 있다.</p>	<p>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3)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2.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2)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3)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4. 기업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p> <p>5.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p> <p>6.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이 될 수 있다.</p>	<p>준회원 -> 학생회원</p> <p>4. 기업회원 추가</p>

<p>제2장 회원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p>	<p>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p>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 시까지 제8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2.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에 제명에서 회원자격의 정지로 변경
--------------------------------------	--	--	--

2010년 4월10일 총회 의결사항

■ 정관대비표

수정조항	수정전	수정후	사유
제1장 총칙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u>지역분회</u>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회의 이름을 지역분회로 통일함
제1장 총칙 제6조 (기구)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 2. 분회 및 연구회.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2.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Quality Summit Forum)	2.학회 세칙으로 운영되어 온 품질서밋포럼을 정관에 포함시킴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거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단, 회비납부 기간에 따라 연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등록 추가 1.정회원을 연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정관에 명시함
제4장 집행부 제14조 (집행부의 구성)	제14조 (집행부의 구성) 1. 집행부는 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제14조 (집행부의 구성) 1. 집행부는 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수정사항 없음
제4장 집행부 제14조 (집행부 임원)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4. 총무 1인 5. 이사 20인 이내(당연직 제외) 6. 위원장 15인 이내 7. 감사 2인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총무 1인 5. 이사 30인 이내(당연직 제외) 6. 위원장 15인 이내 7. 감사 2인	3.부회장 및 이사에 학교 교수님 이외에 기업체 임원들을 부회장과 이사로 선임하여 학회의 산학협력 부분을 강화하고자 함
제4장 집행부 제16조 (임원의 선출)	제16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차기 등기이사는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등기이사는 필요시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차기 등기이사	6. 학회의 여건상 등기이사의 변경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기이사의 선출내용을 변경함 7. 차기임원진의 인준은 직전년도의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1월 1일부터 활동이 가능함. 이에 대한 기준

		가 선출되기 전까지 연임할 수 있다. 7. 차기임원들은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이 없어서 새롭게 추가함.
제4장 집행부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4.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보직에 재직 중일 경우로 제한되며, 보직을 인수받은 차기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표준협회 전문대학회와 관련된 당연직 이사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제4장 집행부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분회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연구회, 위원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회원의 제명 결의. 10.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회원의 제명 결의.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6.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에 대한 설치와 규정승인을 통합
제5장 분회 및 연구회 제24조 (분회의 설치) 제25조 (연구회의 설치)	제 5 장 분회 및 연구회 제24조 (분회의 설치)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분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연구회의 설치) 1. 학회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은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장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 제24조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의 설치)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학회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은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학회의 산학협동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품질서밋포럼을 설치할 수 있다. 4.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의 구성) 1.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1.품질서밋포럼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 추가 2.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의 설치를 통합 3. 구성에 대한 내용 추가

■ 정관대비표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정관 제1장 총칙 제5조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2.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Quality Summit Forum)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2. 지역분회, 연구회 및 Quality Leaders Forum	명칭변경
정관 제4장 집행부 제15조(집행부 임원)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총무 1인 5. 이사 30인 이내(당연직 제외) 6. 위원장 15인 이내 7. 감사 2인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총무 1인 5. 이사 50인 이내 6. 위원장 20인 이내 7. 감사 2인	부회장, 이사, 위원장 인원수 증가
정관 제4장 집행부 제20조(집행부 기능)	제20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분회, 연구회 및 품질서밋포럼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회원의 제명 결의.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분회, 연구회 및 Quality Leaders Forum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회원의 제명 결의. 9.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6. 명칭변경 품질서밋 포럼 => Quality Leaders Forum

2013년 4월 19일 총회 의결사항

■ 정관대비표

수정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	-	(신설) 8. 차차기회장 선출은 현 학회장 임기 마지막 연도 최종 이사회 이전 일정기간동안 임후보 를 받고 이사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한 자로 선출한다.	차차기 회장 선출 절차 구체화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 학회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학회 운영에 사용하 고자 할 경우 전임회장(고문단)의 동의를 구 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다.	기금사용 절차 체계화

2014년 5월 23일 총회 의결사항

■ 정관대비표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품질관리 포함)에 관한 학문과 품질혁신 및 이의 보급, 응용으로 산업발전에 공헌하고,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품질경영(품질관리 포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품질경영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구체화를 위한 문구 수정
제1장 총칙 제6조 (기구)	제6조 (기구) 3. Asian Journal On Quality 편집위원회	삭제	사유. 제1장 총칙 제6조 (기구) 1항과 중복
제2장 회원 제10조 (전회장)	제10조 (전회장)	제10조 (전임회장)	정관 상의 전회장->전임회장으로 명칭 모두 변경
제4장 집행부 제16조 (임원의 선출)	제4장 집행부 제16조 (임원의 선출) 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등기이사는 필요시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차기 등기이사가 선출되기 전까지 연임할 수 있다. 7. 차기임원들은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8. 차차기회장 선출은 현 학회장 임기 마지막 연도 최종 이사회 이전 일정기간동안 입후보를 받고 이사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한 자로 선출한다.	제4장 집행부 제16조 (임원의 선출) 4.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그 외의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단, 전임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고문은 5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6.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등기이사는 필요시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차기 등기이사가 선출되기 전까지 연임할 수 있다. 8. 차기임원들은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9. 차차기회장 선출은 현 학회장 임기 마지막 연도 최종 이사회 이전 일정기간동안 입후보를 받고 이사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한 자로 선출한다.	고문 선출대상 변경 및 16조 조항 번호 변경
제4장 집행부 제21조 (이사회 구성)	제4장 집행부 제21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위원장, 지역분회장, 연구회장 및 전회장으로 구성된다.	제4장 집행부 제21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위원장, 지역분회장, 연구회장으로 구성된다.	전회장 -> 고문으로 변경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1. 학회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학회 운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임회장(고문단)의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1. 학회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학회 운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임회장(고문단)의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다.	고문 삭제

2016년 5월 27일 총회 의결사항

■ 정관대비표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제1장 총칙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2. 지역분회, 연구회 및 Quality Leaders Forum 3. Asian Journal On Quality 편집위원회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이사회, 사무국 및 각종 위원회) 2. 지역분회, 연구회 및 Quality Leaders Forum	Asian Journal on Quality 저널 발행 중단으로 편집위원회 삭제
제2장 회원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석좌회원 회비 면제를 위한 조항 추가
제4장 집행부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이내 4. 총무 1인 5. 이사 50인 이내 6. 위원장 20인 이내 7. 감사 2인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명예회장 1인 3. 차기회장 1인 4. 부회장 30인 이내 5. 총무 1인 6. 부총무 3인 이내 7. 이사 60인 이내 8. 위원장 20인 이내 9. 감사 2인	명예회장과 부총무를 집행부에 추가함. 또한 부회장 및 이사를 각각 10인씩 늘려 집행부 임원 수를 확대하였음
제4장 집행부	제16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그 외의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단, 전임회장을 역임하지 않은 고문은 5인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6.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그리고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등기이사는 필요시 회장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차기 등기이사가 선출되기 전까지 연임할 수 있다. 8. 차기임원들은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9. 차차기회장 선출은 현 학회장 임기 마지막 연도 최종 이사회 이전 일정기간 동안 입후보를 받고 이사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를 한 자로 선출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2. 부회장, 총무, 부총무, 그리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고문은 전임회장 또는 그 외의 인사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6.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위원장, 그리고 지역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세무서 업무로 등기이사는 필요시 회장이 추천한다. 단,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등기업무에만 적용된다. 8. 차차기회장은 [세칙 9호] 차차기회장 선거 운영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9. 자문관은 회장이 위촉한다. 자문관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음의 필요성에 의해 임원 선출 규정을 구체화함. 1. 등기이사 선출 규정을 구체화 함 2. 연구회회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으로 인해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 3. 차차기회장 선출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함. 4. 신설된 자문관 위촉 근거를 마련함.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4장 집행부	제18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제18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차기회장 임기에서 1년을 제외된다. 1년 미만인 경우는 차기회장이 회장업무를 수행한다.	회장 유고 시 대응 방안 마련 및 차기회장의 권한을 명확히 함.
제4장 집행부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위원장, 지역분회장, 연구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고문, 전임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이사, 위원장, 지역분회장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멤버에 전임회장, 부총무 추가함. 또한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로 인한 규정 개선.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1. 학회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학회 운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임회장(고문단)의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다.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1. 학회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적립된 기금 중 일부를 학회 운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임회장의 동의를 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다.	전임회장과 고문 역할 분리에 따른 문구 수정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결산) 1. 회장은 1차 이사회 보고 1주일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 작성을 결산 2개월 전에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1주일 전으로 수정
제7장 보칙	제35조 (광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외부에 중앙일간지 광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광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에 광고하여야 한다.	학회의 주요 변동 사항을 모두 중앙일간지에 광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수정함.